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(2002. 1. 14개정, 법률 제6998호)
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감독 등
사무가 시장·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충청북도수리계
관리조례 존치가 불필요함

□ 주요골자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폐지

□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□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(조례 제2333호 1997.7.4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도지사가 조직·운영하는 수리계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.

관계법령 발췌

【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】

- 제43조(수리계)** ①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"라 한다)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·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- ②(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시·도지사가 조직·운영하는 수리계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.